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이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줄어든다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17. 12.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요, 올해 6. 13.부터 시행되는 제도 중에는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 법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과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한다는 개인회생 제

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축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과거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되,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11조제5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여기서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이 궁금해지는데요, 그 내용을 찾아가 보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채권자가 동의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런 동의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청산가치가 장래의 총변제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재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함으로써 총변제액을 청산가치보다 크게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 최소한 같거나 커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전보다 더 빨리 적극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 저는 8월 말경 둘째아이를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첫째아이는 산후조리 중인 제가 외출이 힘들어 남편이 휴가를 내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마쳤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반가운 뉴스를 접하게 되어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지와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기존 출생신고 방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A. 그 동안 출생신고는 신고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 직후 산후조리로 힘든 산모나 출근하는 남편이 휴가를 내고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시행일인 2018. 5. 8. 08:00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이 직접 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부담 없이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산하고,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제공에 산모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목록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신고인은 공인인증서와 출생증명서를 준비한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존 출생신고 방법과 온라인 출생신고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방문·우편 출생신고	온라인 출생 신고
신고인 적격	혼인중의 부/모	가능	가능
	혼인외의 모	가능	가능
	기타 (부모의 친권자 /성년·미성년 후견인, 동거친족/분만 관여자 등)	모두 가능	부모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만 가능
병원	출생신고 가능한 병원	제한 없음	참여병원 한정
	접수관서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등록기준지
	접수시간	관서운영시간 (월~금: 09~18:00)	제한 없음 (365일 24시간)
	출생신고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 (기간도과시 과태료 부과)	출생 후 1개월 이내 (기간도과시 과태료 부과)
	출생증명서	원본	스캔/모바일 첨부
	출생증명정보 제공 동의	불필요	필요